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

개정 법률에서 보험-정비 업계간 이해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위원장의 선출방법, 회의소집방법, 세부 운영 규정 설정 권한 등 자동차보험정비협회의 구성·운영방법에 대해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3조의12, 1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2년, 연임가능) 등에 대해 규정

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안 제33조의1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정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안 제33조의15)

법률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외에 관련 자료수집·관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기록 정보 및 보관 기간(안 제33조의1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해제, 운전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6개월동안 보관하도록 규정

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요구 절차(안 제33조의17)

법률에서 정하는 사고 피해자, 제작자등, 보험회사등이 관련 차량번호, 사고일시 등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 제9항, 제10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근거를 규정

아.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별표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제작자등, 보유자, 그 외 관련자), 횡수 등에 따라 50만원~1천만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1대당 100만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훼손한 경우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의12를 제33조의18로 한다.

제33조의13을 제33조의19로 하고, 제33조의12부터 제33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IT 등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한 사람
8.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 등에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9.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3조의13(사무국의 설치) 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해당 사고의 당사자 또는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7.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③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9조의15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결과에 관한 심의·의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 요청 및 협조

3.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견 제시

4.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수집·분석 및 관리·제공에 필요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정보 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5. 사고조사 기법 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연구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법 제39조의15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에 대한 사고 관련 부품, 장치,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의 제출 요구
2. 해당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보관자에 대한 질문,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이나 장치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이나 장치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① 법 제39조의1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9조의17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3조의17(분석·조사결과의 요구 등) ① 법 제39조의17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차량번호, 사고일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5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부설 기관에 위탁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별표 5 제2호 위반행위 파목을 위반행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하목을 위반행위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위반행위 파목부터 위반행위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법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법 제48조제2항 제5호	1회	2회	3회
--	---------------	----	----	----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제작자등 2) 보유자				이상
		3 0 0	5 0 0	1 천
		만원	만원	만원
		5 0 만	1 0 0	2 0 0
		원	만원	만원
하. 법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제6호	2천만원 한도에서 판매한 자동차 1대당 100만원		
거. 법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1)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훼손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제7호	5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u> <u>2. 시간당 공임(工賃)</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5조의 2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u> <u>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 <u>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u>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IT 등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

8.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 등에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9.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신 설>

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3조의13(사무국의 설치) ①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신 설>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
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진술
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의 보유자, 운전자, 해당 사고
의 당사자 또는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
서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대
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의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
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
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
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7.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사고 자율
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과 관련된 자문, 연
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

<신 설>

우

③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관련
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
고조사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
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33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
무) ① 법 제39조의15 제1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결
과에 관한 심의·의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결함
에 대한 조사 요청 및 협조
3.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관
련된 의견 제시
4.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수
집·분석 및 관리·제공에 필
요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정

보 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5. 사고조사 기법 등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관련 연구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제1
호 및 법 제39조의15제3항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에 대한 사고 관련
부품, 장치, 해당 자동차의 구
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보
의 제출 요구

2. 해당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보관자에 대
한 질문,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해당 자
동차 또는 부품이나 장치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제2
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이

<신 설>

나 장치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① 법 제39조의1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9조의17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신 설>

제33조의12 · 제33조의13 (생략)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⑧
(생략)

<신 설>

란 6개월을 말한다.

제33조의17(분석·조사결과의 요구 등) ① 법 제39조의17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차량번호, 사고일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3조의18 · 제33조의19 (현행 제33조의12 및 제33조의13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

<신 설>

교통안전공단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부설 기관에 위탁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